

기업지배구조 수렴론

김 화 진

(미국 뉴욕주 변호사)

【 초 록 】

회사라는 형태의 기업조직을 둘러싸고 움직이는 주주, 경영진, 종업원, 채권자, 기타 여러 경제주체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원리와 규칙의 총체인 기업지배구조론은 효율성의 증대 연구를 최우선과제로 한다. 기업지배구조론의 핵심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비교법적인 연구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른바 수렴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기업지배구조는 각기 다른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경로의존성이 강하고, 따라서 수렴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과, 글로벌 경제시대의 도래가 강력한 수렴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시각이 대립한다. 이 글은 그러한 수렴론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사례가 수렴론을 뒷받침하며, 기업지배구조의 수렴에는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이 현저하다는 논의를 간략히 전개한다.

【 차 례 】

- I. 기업지배구조론
- II. 기업지배구조 수렴론
 - 1. 배 경
 - 2. 수렴한계론 및 절충설
 - 3. 증권법의 수렴현상
 - 4. 금융법의 수렴현상
 - 5. 우리나라의 사례와 시사점
- III. 기업지배구조의 수렴과 국제법
 - 1. 국제기구와 국제법의 역할
 - 2. 자본시장의 세계화와 국제법
- IV. 맺 는 말

I. 기업지배구조론

기업형태에 의한 시장에서의 참여가 보편성을 띠게 된 것은 기업형태가 거래비용을 절감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형태는 그 자체가 별도의 내부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 비용을 줄여 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원리의 발견은 회사법의 가장 큰 과제들 중 하나이다.

기업활동의 가장 단순한 모델은 저렴한 가격으로 원료를 구입하여 고부가가치의 기술로 그를 가공한 제품을 생산한 후 고가로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과정은 그 규모가 커질수록 수많은 지원요소를 필요로 하게 되며 그로부터 조직화에 수반되는 일정한 비용이 발생한다. 구매, 관리, 연구, 마케팅, 영업, 광고 등 기업의 생산과 판매를 지원하

는 활동과 금융 및 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투자, 분배하는 활동이 그것이다. 기업활동의 성패는 원료를 제품으로 연결시키는 기술력이 결정적으로 좌우하지만 그를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직력도 특히 대규모 기업의 경우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조직원리와 규칙의 제정, 정비, 개선은 각 기업단위로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가 모든 개별기업들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규범의 총체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는 국가경제 전체의 조직 문제이다. 회사법의 중요한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회사법은 회사라는 가장 중요한 형태의 기업조직을 둘러싸고 움직이는 주주, 경영진, 종업원, 채권자, 기타 여러 경제주체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원리와 규칙을 제공해야 하는 임무를 띤다. 이는 기업의 핵심적인 조직원리이다. 이 문제를 연구하는 분야를 회사지배구조론(Corporate Governance)이라고 부른다.¹⁾

회사지배구조론의 최우선 과제는 조직의 효율성 증대이다. 효율성의 증대는 생산비용을 절감시켜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킴으로써 기업조직을 둘러싸고 살아가는 여러 경제주체들에게 분배될 수 있는 파이의 크기를 크게 한다. 그러나 모두의 기여에 의해 창출된 이익을 기여의 크기에 따라, 약속된 바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하는 문제의 연구도 회사지배구조론의 또 다른 큰 과제이다. 이 과제가 적절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계 주체들간의 이해대립이 심화되고 이는 바로 효율성의 저하로 직결된다. 회사지배구조론은 회사이익의 부당한 사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발견과 정비에 관한 연구이기도 하다. 공정한 분배는 사회적, 정치적 안정을 돕는다. 나아가, 회사지배구조론은 정부, 기타 여러 형태의 조직들의 운영원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들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회사법은 증권관계법의 도움을 받는다. 현대의 대규모 회사들은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일정한 규칙의 준수를 요구함으로써 회사지배구조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일부 성취할 수 있다. 대표적인 메커니즘이 기업정보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요구이다. 투명한 기업에서는 그렇지 못한 기업에서보다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 역시 회사 형태인 금융기관들의 경우에는 그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 때문에 별도의 규제가 가해지는데,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는 금융기관규제법과 그 감독규칙에 의한 추가적인 규율의 대상이 되며 회사지배구조론은 금융기관규제법의 도움을 받는다. 투명한 기업에는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것들은 점차 상호의존성이 커지고 대규모 기업의 도산이 지구촌 전역에 걸친 금융시장에서의 도미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발도상국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은 해당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제사회의 문제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회사의 지배구조는 해당 경제 전체의 발전과 민주화로 연결되고 그에서 발생하는 풍요와 민주적인 정치제도는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인권향상에 도움이 된다.

모든 나라가 자국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상이한 문화적, 정치적 배경에서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각기 독자적인 조직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운영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각국 경제의 통합화와 기업활동의 범세계화, 금융의 국제화는 각국 기업, 시장의 조직원리에 있어서 수많은 공통점을 생성시켰고, 궁극적으로는 조직원리, 규칙의 통합화가 진행되게 하였다. 국제기구들의 활동은 그에 필요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협력과 조율을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국제법 규범을 생성시키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칙에 의한 경제활동은 참가자들 모두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예측 가

능성이 제고되기 때문이다. 통일된 규칙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기업들의 지배구조마저 유사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과연 세계 각국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하나의 이상적인 형태로 수렴되어 갈 것인가 이다. 만일 그렇다면 각국의 입법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그러한 시장의 움직임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또, 세계 각국의 기업지배구조가 수렴되어 간다면 그 수렴된 지배구조의 내용은 무엇이 될 것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도 중요한 의문이다. 수렴된 기업지배구조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이른바 세계의 회사법이 될 가능성이 있고 세계의 모든 기업들의 생산성과 경제주체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그 정비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일 미국식으로 수렴되어 간다면 세계 각국은 자국 증권시장의 발달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업지배구조 수렴론을 둘러싼 학계의 논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 분야는 비교법과 비교산업조직, 비교경제조직론에 의한 연구방법이 본질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그 진가를 발휘하는 분야이다.2)

II. 기업지배구조 수렴론

1. 배 경

세계 각국에 있어서의 기업지배구조가 공통점이 많아지고 어떤 국적 불명의 이상적인 한 가지 형태로 점차 수렴해 갈 것이라는 관측은 미국 연방증권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브루클린 법대의 로베르타 카멜 교수에 의해 가장 먼저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3) 그러나 이러한 관측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영향을 받은 시카고 학파의 회사법 학자들이라면 모두 동의할 내용이라 할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각 주법간의 경쟁에 의해 회사법들의 내용이 수렴되어 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델라웨어주 법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업들의 활동과 자금의 조달이 국제화되어 감에 따라 미국에서 나타난 그러한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4) 회사법의 소비자들인 기업은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제공하는 회사법을 제공하는 국가로 그 중심(설립지 또는 활동지)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5) 아니면, 기업들이 자금조달의 필요나 그밖의 이유로 인해 어떤 외국의 회사법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 그러한 사정이 그 기업 출신국의 법률의 변화에 반영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각국의 회사법과 증권법이 점차 수렴되어 간다는 것이다.

이는 독일과 같은 선진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자본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6) 또,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자본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7) 등에 공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재 국제시장에서 미국 델라웨어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는 단연 미국이다. 여기에는 미국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외국 기업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는 미국의 증권관련 법령들이 요구하는 회사지배구조상의 요건들이나 기업정보의 공개에 관한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자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장려하려는 개발도상국들은 그러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법상의 요건들을 고려한 입법을 행하기도 하며, 선진국의 대기업들의 경우 자국 정부에 그러한 방향의 작업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의 압도적인 영향 아래 있는 국제금융기구들의 자금지원을 받는 나라의 경우 미국계 투자자들의 사업 운영상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요청이 자금지원 조건에 반영되어 미국형 투자자들의 요구에 맞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한다.8)

2. 수렴한계론 및 절충설

미국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의 관계가 현재와 같이 상호 지배를 차단하고 있는 형태로 구

성되어 있는 이유를 정치적인 측면에서 찾으려 하는 미국의 학자들은 기업지배구조의 수렴론에 대해서도 한계론을 제시하고 있다. 컬럼비아 법대의 마크 로, 하버드 법대의 루시안 벵척 교수 등이 그러하다.9) 이들에 의하면 각국의 정치, 사회, 문화가 결정하는 이른바 경로의존성10) 때문에 각국의 제도가 수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지배적 현상인 소유의 집중현상은 미국식의 소유와 경영의 광범위한 분리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며 증권시장의 발달도 그에 상응하는 한계를 가질 것이고 간접금융의 중요성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한편, 미국 회사법의 최고 권위자들 중 한 사람인 컬럼비아 법대의 존 카피 교수는 일종의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11) 카피 교수에 의하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정도는 소수 주주들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에 좌우될 것이며 기업의 경영진을 통제하는 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시장이 발달할수록 기업지배구조의 수렴은 촉진될 것이라 한다. 카피 교수는 또한 폴란드와 체코의 민영화 사례를 연구 한 결과, 유럽 국가들의 경우 소유의 집중을 상정하고 있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기업정보의 공개가 자본시장보다는 내부의 감독 기구(감사위원회)에 대해 이루어져 왔고, 따라서 대륙법 체계 자체가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가 중요한 관건이 되는 증권시장의 발달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12)

3. 증권법의 수렴현상

세계 각국의 증권법이 회사지배구조와 나아가 회사법 전반의 수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세계 각국의 증권법들이 급속히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회사법 측면에서는 각국의 회사법들이 상당히 다른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 각국의 경제가 각기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수렴한계론이 강력하지만, 증권법의 영역에서는 수렴현상의 급진전에 대해 별 이론이 없는 듯 하다. 이는 EU의 증권법 통합의 성공과13) 회사법 통합의 실패에서 잘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각국의 회사법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인정, 누적투표제, 1주 1의결권, 이사의 책임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이한 원칙과 규칙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상이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나, 증권발행, 유통, 공시 등에 관한 증권법규의 내용은 세계적인 통일 현상을 보이고 있다. 카피 교수도 증권법의 수렴현상이 그 속도면에서 회사법의 수렴현상을 앞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증권발행과 유통, 공시를 규율하는 증권법은 사인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성격의 법이 아니며 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보편성을 띠는 것임에 반하여 회사법은 회사를 둘러싸고 움직이는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를 강하게 반영하면서 각국의 기업경영 문화와 함께 발달해 온 사법이라는 데서 그 이유의 일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14) 증권법의 수렴현상은 기업지배구조의 수렴을 촉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4. 금융법의 수렴현상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예금자나 기타 경제주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규율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금융법들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금융법은 금융기관 자체의 지배구조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금융기관들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는 금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장치의 하나이다. 둘째,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와 자본금에 대한 규제는 금융기관의 투자활동과 대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관련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간접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금융기관의 일반 회사 주식취득 범위, 의결권의 행사 등에 관한 규제와

자기자본비용의 유지에 대한 규제 등이 그러하다. 금융기관들은 차주 기업들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은행들이 기관투자자로서 기업지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금융법들도 세계적인 수렴현상을 보이고 있다.15) 금융시장의 세계화가 금융기관들의 활동을 국제화시켰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이나 재무구조에 관한 각국에서의 규제가 많은 공통성을 띠어 가고 있다. 이러한 수렴현상은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 내 바젤위원회,16) 캐나다 몬트리올의 국제증권위원회기구(IOSCO),17) 국제보험감독기구연합, 국제회계기준위원회 등의 국제기구들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는 다양한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이 각국의 국내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통해 크게 촉진되고 있다. 또, EU의 경우 EU법에 의한 금융법, 금융서비스법 통합작업이 진행되어 왔다.18) 시장이 통합되어 가고 규범의 내용이 수렴화되어 감에 따라 각국 시장감독당국간의 협조체제 구축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는데, 상기 국제기구들이 그에 필요한 적합한 포럼을 마련해 주고 있다.19)

5. 우리나라의 사례와 시사점

우리나라의 사례는 기업지배구조 수렴론을 뒷받침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아 국제금융기구들의 직접적인 영향력하에 제도의 개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었고 그 내용은 미국식이다.20)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금융시장 진출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가 국제시장에서의 압력에 쉽게 충격을 받고 적응하는 데 큰 요인이 되었다. IMF 사태 이후 상법, 증권거래법, 은행법 등 주요 법령의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는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을 위시한 기능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시도되어 왔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을 제외하면 소유구조의 변동을 제한하던 법규상의 규제들도 대부분 사라졌고 일부 산업 분야에 잔존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도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 기업의 소유구조가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증가와 더불어 변화하였고, 이는 M&A를 통한 경영권 이동의 가능성도 크게 높여 놓았다. 코스닥시장에의 등록요건에는 소유분산 요건이 강화되어 차세대의 대기업들인 코스닥기업들은 출발부터 기존의 대기업들과는 다른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IMF 사태 이후 현장에서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이 모든 제도상, 환경의 변화를 기업경영자나 투자자들이 공히 명확히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 같으면 전혀 문제시되지도 않았을 소수주주 문제에 대해 소규모 회사들이 염려하고 배려하는 경향이라든지 대기업들의 경우 투자자 관리, 경영권 안정대책 등이 이제는 거의 기업경영의 에프엠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이다. 더구나 외국에서 증권을 상장한 기업, 비상장 증권을 발행한 기업, 국내에서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기업, 시민단체의 주요 주목대상인 기업 등에 있어서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투자자 배려 등이 기업경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정착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 년간 일어난 일들은 세계화시대의 국제사회 변화와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국내, 국제적 평면에서 규율하는 법률과 제도의 전개방향을 명확히 시사해 주고 있다. 즉, 시장에 참가해서 시장의 혜택을 누리려는 경우 그 시장의 스탠다드(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를 갖춘 국내시장을 세계시장의 일부로서 개방해야 하며, 시장 참가자 및 관리자 등의 의식과 행동양식도 그 스탠다드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례는 기업지배구조 수렴론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물론, 향후 전개될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경로의존성에 의한 한계가 드러나고 우리나라도 결국 수렴한계론의 한 사례가 될 수는 있으나 최소한 지금까지의 관찰결과는 그렇지 않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 변화의 내용이 반드시 IMF 등 국제기구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특히 외국 학자들의) 흥미를 끄는 것 같다. 즉,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등의 과제는 국제규범에 의해 우리에게 부과된 것이지만 그 밖에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나 제도정비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비록 완전히 자발적인 것들은 아니지만 국제법규에 의해 직접 요구받은 것은 아니다. 뮤추얼펀드의 도입, 자산유동화제도의 도입, 지주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경로의존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제도들은 우리나라의 문화나 정치적인 초기 조건에 의해 나타나는 것들은 아니며 국제기구들에 의한 개혁 프로그램과 크게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III. 기업지배구조의 수렴과 국제법

1. 국제기구와 국제법의 역할

개발도상국들과 신흥 시장경제국가들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문제는 세계은행, IMF, 유럽은행 등과 같이 그들 국가의 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낙후된 기업지배구조는 경제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국제사회에 부담을 발생시키는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위기 상황에 있는 국가에 지원을 제공한 이들 기구의 입장에서는 경제회복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수행과 대출금의 회수에 해당국 기업들의 효율성, 건전성 등이 초미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들 국제기구들은 최근 세계 각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연구활동을 강화하면서 실제로 자금지원을 받는 국가들의 경우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요구를 비중 있게 포함시키고 있다.

자금지원국 사이드를 대표하는 OECD도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 하면서 세계은행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OECD가 마련한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은 세계 각국의 개별적인 가이드라인에 많은 영향을 미친 바 있으며,²¹⁾ 1999년 9월에 채택된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도 그 범주에 든다.²²⁾

이들 국제기구들은 자연스럽게 세계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의 국제적인 포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각국의 가이드라인들도 상호 유기적인 교호작용과 국제기구들이 마련한 별도의 규범에 의해 그 내용에 있어서 수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²³⁾ 여기서 국제법에 의한 기업지배구조 수렴의 촉진효과가 발생하며 그 중요성은 향후 증대되어 갈 것이다.

한편,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제규범의 발달에 있어서는 이른바 국제 “소프트 로”(Soft Law)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 로란 국제사법법원규정 제38조상의 국제법의 형식적 법원은 아니지만 그 유연성과 사실상의 규범력 측면에서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법제정 방식이다.²⁴⁾ 위 OECD의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나 BIS 규칙 등도 이 범주에 든다. 이 규범들은 증권, 금융, 다국적 기업 등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특히 발달되어 있으며,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규범에 기초하여 국내법을 제정하였거나 국내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규범들은 조약이나 관습국제법의 경우에 나타나는 국제법 성립상의 장애요인, 국내적 적용의 번거로움이나 효력 문제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2. 자본시장의 세계화와 국제법

세계화에 의한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의 출현은 지난 세기 동안 진행되어 온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한 국가주권 잠식현상의 새로운 전개현상이다. 국가주권과 국가영역 개념이 갖는 의미는 지난 세기 후반에 급속히 전개된 세계금융시장의 통합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²⁵⁾ 과거 환경문제, 인권문제 등에 의하였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감소되었다.²⁶⁾ 경제와 문화활동에 있어서도 그에 상응하여 글로벌화의 추세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이 그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각 주권국가의 법질서와 국제사회의 법질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법규범의 형성과 집행에 있어서 각 주권국가들이 보유하고 온 독자적인 힘의 크기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고 각 주권국가의 국내법 형성과정에는 인간생활의 보편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국제기구들의 영향력이 현저하며 국제기구의 수적 증가는 국내법과 한 국가 내에서의 사람들의 생활에 국제법이 직접적이고도 큰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²⁷⁾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국내 규범과 생활패턴은 어떤 보편성을 띠게 되었고 기업지배구조론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은 수렴(Convergence)이라는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²⁸⁾ 이는 강대국들의 이익이나 가치관이 이른바 국제표준을 형성하였던 19세기, 20세기 전반의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는 상황이며, 개발도상국들의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인해 ‘인류공동의 유산’ 개념이 등장하고 보편주의가 지배하던 1960년대 이후와도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른바 세계화(Globalization)는 각국에서의 소비자 경제시대가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결합되어 세계의 모든 국가로 하여금 동일한 경제적 규범에 복속하도록 하는 지극히 비정치적인 현실이며 따라서 목표가 아닌 필연적인 결과이다.²⁹⁾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세계경제에 긴밀하게 편입되어 있는 국가는 자국 경제의 운영 실패가 국제사회의 위기발생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시각이 향후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의무의 이행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제 인권법의 발전배경과 유사한 메커니즘이다. 경제운영,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 등의 문제는 국내문제로서의 성격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조차도 이러한 범주에 점차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 개념의 등장은 비록 그 성격은 전혀 다르지만 지난 세기 초 유럽 국제법학계의 큰 이론적인 쟁점이었던 자연법 질서의 인정 문제를 생각나게 한다. 국가의 의사에 의해 성립된 실정법의 상위에 위치하는 인간의 보편이성에 근거한 자연적 권위란 세계화시대에는 바로 경제적 효율성의 가치와 경제적 민주주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러한 가치들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국제 소프트 로에 잘 반영되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실질적인 규범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현대 국제법 이론에도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국제법 규범의 형성과 효력에 관하여 국제법 이론은 초기의 자연법론에서 출발하여 국제법 의무의 기초로서 개별 국가의 동의를 강조하는 실증주의로 변천하였던바, 이는 국가관행의 확인과 그를 통한 관습국제법의 인정에 절대적인 비중을 두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제법원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의 법창설 기능에 대한 관심은 미미하다. 그러나 구소련을 포함한 공산주의 제국의 등장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국제사회 참여, 다수의 제3세계 신생독립 국가들의 출현은 국제사회에서 극도로 다양한 정치, 이념, 문화적 배경의 혼재를 초래하였고 고전적인 실증주의는 현대 국제법 규범의 형성과 효력 문제를 설명하는 데 부적합한 이론이 되었다.³⁰⁾ 이제 세계의 국제법 학계는 국제관계이론과 유기적으로 교류하면서 다양한 국제법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³¹⁾ 여기서는 특히, 국제기구와 국제법원 등 보다 광범위한 장을 통해 표출되는 국가의 의사가 국제법적 의무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독일 뮌헨대학교 짐마 교수의 변형된 실증주의 이론이 주목받고 있다.³²⁾

IV. 맺는 말

금융시장의 세계화 내지 미국화는 세계 각국의 회사법, 증권법, 금융기관규제법 등을 미국형으로 변화시킨다. 그 과정에서는 국제법과 국제기구들의 역할이 괄목할 만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금융의 국제화, 활동의 국제화는 우리나라의 시스템 자체를 미국화시킴으로써 진화론적인 적응과정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특히, IMF 체제에 의한 세계경제로의 편입이 좋은 계기가 되었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출현은 세계경제의 효율화를 촉진시킨다. 미국 스탠다드의 글로벌 스탠다드화가 각국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인지는 실증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나 회사 지배구조, 증권법상의 공시제도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투명성의 철학과 M&A의 발달에서 발생하는 효율성 위주의 문화가 그 시스템을 채택하는 나라의 경제와 정치, 사회의 민주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유력하며 실제로 그러한 미국적 철학과 문화는 세계 각국에 빠른 속도로 (최근에 들어서는 미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각국 시스템의 변화에는 법률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계 각국의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채택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국제기구와 국제법이 대단히 적합한 포럼을 제공할 수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형성과 세계경제, 각국 국내경제의 효율성 제고는 세계적, 지역적, 국내적 부의 공정한 분배 문제와 항상 유기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국제법과 국제기구들은 그 속성상 정치, 경제, 사회의 민주화 실현이라는 명제를 존립이유의 하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조절,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효과적인 의견수렴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한 회사법, 자본시장법, 금융기관규제법 등의 연구와 정비, 그에 따른 경제의 효율화, 공정한 부의 분배,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작업도 ‘평화와 인권’이라는 궁극적인 가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이 모든 현상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각국 경제의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문화적 요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도 세계화시대에는 필수적이다. 이는 인류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의미 외에도 참된 의미의 글로벌 스탠다드의 내용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지배구조를 포함한 우리나라 시스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에 필요한 연구와 세계경제와의 통합과정에 대한 관찰은 계속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우리나라의 경제, 기업문화, 나아가 정치, 사회의 고유한 특성과 그로써(만) 설명되는 경제, 기업, 시장, 법률과 제도의 현실 및 변화에 대한 보고와 함께 국제적인 포럼에 알리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무대에서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되며,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 정합성 실현은 우리나라가 관련 국제법 규범의 형성에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회사지배구조론에 관한 가장 최근의 개관으로, Michael Bradley, Cindy A. Schipani, Anant K. Sundaram & James P. Walsh, *The Purposes and Accountability of the Corporation in Contemporary Society: Corporate Governance at a Crossroads*, 62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9 (1999) 참조. 국내 문헌으로는 김화진, *M&A와 경영권*(개정증보판, 1999); 정광선, *기업경쟁력과 지배구조*(한국금융연구원, 1994); 한국형 사외

이사제도에 관한 연구(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9) 참조.

2) 최근의 가장 중요한 비교법적 연구 결과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Mark Roe,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in: 1 The New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 and the Law 339 (1998), <<http://www.law.columbia.edu/law-economicstudies/papers/workp125.pdf>> (잘 정리되고 깊이 있는 개관); <<http://www.law.columbia.edu/law-economicstudies/abstracts.html>> (Columbia Law School Center for Law and Economic Studies Working Paper Abstracts);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The State of the Art and Emerging Research (Klaus J. Hopt et al. eds. 1998); Institutional Investors and Corporate Governance (Theodor Baums et al. eds. 1994) (독일 오스나브뤽대학 국제 심포지엄); The Japanese Main Bank System: Its Relevance for Developing and Transforming Economies (Masahiko Aoki and Hugh Patrick eds. 1995) (일본); John C. Coffee, Jr., Liquidity Versus Control: The Institutional Investor as Corporate Monitor, 91 Columbia Law Review 1277 (1991) (미국 시스템이 외국의 시스템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 Bernard S. Black & John C. Coffee, Jr., Hail Britannia?: Institutional Investor Behavior Under Limited Regulation, 92 Michigan Law Review 1997 (1994) (영국); G. P. Stapledon, Institutional Shareholders and Corporate Governance (1996) (영국, 호주: 옥스포드대학 박사학위논문); James A. Fanto, The Transformation of French Corporate Governance and United States Institutional Investors, 21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 (1995) (프랑스); Ronald J. Gilson & Mark J. Roe, Understanding the Japanese Keiretsu: Overlaps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Industrial Organization, 102 Yale Law Journal 871 (1993) (일본); Mark J. Roe, Some Differences in Corporate Structure in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102 Yale Law Journal 1927 (1993) (미국, 독일, 일본: 각국 산업의 구조가 정치적 결정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 Hwa-Jin Kim, Toward the "Best Practice" Model in a Globalizing Market: Recent Developments in Korean Corporate Governance, forthcoming in 5 Yearbook Law & Legal Practice in East Asia (2000)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 정합성에 관한 보고); Richard M. Buxbaum, Institutional Owners and Corporate Managers: A Comparative Perspective, 57 Brooklyn Law Review 1 (1991) (독일); Ronald J. Gilson & Reinier Kraakman, Investment Companies as Guardian Shareholders: The Place of the MSIC in the Corporate Governance Debate, 45 Stanford Law Review 985 (1993) (스웨덴); Bernard Black & Reinier Kraakman, A Self-Enforcing Model of Corporate Law, 109 Harvard Law Review 1911 (1996) (러시아); Roberta Romano, A Cautionary Note on Drawing Lessons from Comparative Corporate Law, 102 Yale Law Journal 2021 (1993) (비교법적 방법론에 대한 신중론); Edward B. Rock, America's Shifting Fascination with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74 Washington University Law Quarterly 367 (1996); Jonathan R. Macey, Italian Corporate Governance: One American's Perspective, 1998 Columbia Business Law Review 121 (이태리); Jonathan R. Macey & Geoffrey P. Miller, Corporate Governance and Commercial Banking: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48

Stanford Law Review 73 (1995) (은행의 회사지배 허용론에 대한 비판); Curtis J. Milhaupt, A Relational Theory of Japanese Corporate Governance: Contract, Culture, and the Rule of Law, 37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3 (1996) (일본의 사례가 회사지배구조의 경로의존성 이론을 뒷받침해 준다는 결론); Hwa-Jin Kim, Markets,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rporate Governance: Perspectives from Germany, 26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371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1995) (EU의 금융시장 통합이 독일 기업의 지배구조를 미국형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내용).

3) Roberta S. Karmel, Is It Time for a Federal Corporation Law?, 57 Brooklyn Law Review 55, 90 (1991) 참조.

4) 증권시장의 통합화 현상과 세계 각국 증권법의 (미국형으로의) 수렴현상은 미국 증권법의 국외적용과 인터넷의 사용으로 인해 더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증권법의 국외적용 문제와 법체계간 경쟁의 효율성과의 상관관계 문제에 대하여는 Stephen J. Choi & Andrew T. Guzman, Portable Reciprocity: Rethinking the International Reach of Securities Regulation, 71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903 (1998) (상이한 제도간의 경쟁이 세계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주장); Stephen J. Choi & Andrew T. Guzman, The Dangerous Extraterritoriality of American Securities Law, 17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Business 207 (1996); Merritt B. Fox, Securities Disclosure in a Globalizing Market: Who Should Regulate Whom, 95 Michigan Law Review 2498 (1997); Merritt B. Fox, The Political Economy of Statutory Reach: U.S. Disclosure Rules in a Globalizing Market for Securities, 97 Michigan Law Review 696 (1998); Roberta Romano, Empowering Investors: A Market Approach to Securities Regulation, 107 Yale Law Journal 2359 (1998); Amir N. Licht, Regulatory Arbitrage for Real: International Securities Regulation in a World of Interacting Securities Markets, 38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563 (1998) (증권시장의 세계화가 각국 법률간의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킨다는 주장); Joel P. Trachtman, Recent Initiatives in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ion and Goals of Competitiveness, Effectiveness, Consistency and Cooperation, 12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Business 241 (1991) 등을 참조. 인터넷이 증권법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는 John C. Coffee, Jr., Brave New World?: The Impact(s) of the Internet on Modern Securities Regulation, 52 Business Lawyer 1195 (1997) (증권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reputational intermediary'의 위치가 인터넷의 시대에는 거래의 직접성 촉진으로 말미암아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Richard Cameron Blake, Advising Clients on Using the Internet to Make Offers of Securities in Offshore Offerings, 55 Business Lawyer 177 (1999) 등을 참조. 증권법의 국제적 이슈들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Gunnar Schuster, Die internationale Anwendung des Börsenrechts (1996)를 참조할 것. 이 책은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박사학위논문출판한 것으로서 약 700페이지에 이르는 포괄적이고 방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담고 있는 걸작이다.

5) 이는 국제 회사법의 핵심적인 이슈와 관련된다. 회사의 법적 지위와 조직상의 문제를 포함한 회사 내부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는 회사 설립지의 법률에 의한 규율을 받는다는 것이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 영미법계 국가들에 있어서 통용되는 원칙이며, 그와는 반대로 그러한

문제들은 회사의 주된 영업지 법률의 규율을 받는다는 것이 독일을 포함한 대다수 대륙법계 국가들에 있어서 통용되는 원칙이다. Matthias Herdegen, Internationales Wirtschaftsrecht 175-178(2판, 1995) 참조. 또, Daniel Zimmer, Internationales Gesellschaftsrecht (1996) 참조.

6) Jeffrey N. Gordon, Pathways to Corporate Convergence?: Two Steps on the Road to Shareholder Capitalism in Germany: Deutsche Telekom and Daimler Chrysler, 5 Columbia Journal of European Law 219 (1999) 참조.

7) Hwa-Jin Kim, Living with the IMF: A New Approach to Corporate Governance and Regul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17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61 (1999) (우리나라 금융시장 및 기업금융의 국제화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미국형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내용) 참조.

8) Hwa-Jin Kim, Taking International Soft Law Seriously: Its Implications for Global Convergence in Corporate Governance, forthcoming in 1 Journal of Korean Law (2001) (기업지배구조의 범세계적 수렴현상과 국제법의 역할에 대한 분석) 참조.

9) Lucian A. Bebchuk & Mark J. Roe, A Theory of Path Dependence in Corporate Governance and Ownership, 52 Stanford Law Review 127 (1999) (회사구조의 경로의 존성 이론); Mark J. Roe, A Political Theory of American Corporate Finance, 91 Columbia Law Review 10 (1991) (미국 회사의 지배구조에서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배제되어 있는 현상을 금세기초 미국에서 이루어진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방지라는 근본적인 정치적 결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여 미국의 관련 학계에 큰 전기를 마련한 기념비적인 연구); Curtis J. Milhaupt, Property Rights in Firms, 84 Virginia Law Review 1145 (1998); John Pound, The Rise of the Political Model of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Control, 68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103 (1993); Ronald J. Gilson, Corporate Governance and Economic Efficiency: When Do Institutions Matter?, 74 Washington University Law Quarterly 327 (1996) 참조.

10) 경로의존성의 개념은 Mark J. Roe, Chaos and Evolution in Law and Economics, 109 Harvard Law Review 641 (1996)에 잘 설명되어 있다.

11) John C. Coffee, Jr., The Future as History: The Prospects for Global Convergence in Corporate Governance and Its Implications, 93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641 (1999). 카피 교수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법률가들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미국연방대법원 판례를 비롯한 약 60건의 연방법원 판결이 카피 교수의 연구를 인용하였으며 동 교수의 연구는 약 1,000편 이상의 로 저널 논문에서 인용되었다.

12) John C. Coffee, Jr., Privatiza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The Lessons from Securities Market Failure, 25 Journal of Corporation Law 1, 38 (1999) 참조.

13) Manning Gilbert Warren III, Global Harmonization of Securities Laws: The Achievement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31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185 (1990); David Reid & Andrew Ballheimer, The Legal Framework of the Securities Industry in the European Community Under the 1992 Program, 29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103 (1991); Uri Geiger, Harmonization of Securities Disclosure Rules in the Global Market? A Proposal, 66 Fordham Law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99 (1999); Christoph Schreuer, Recommendations and the Traditional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20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77 (1977); Joseph Gold, Strengthening the Soft International Law of Exchange Arrangements, 77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43 (1983) 참조. 소프트 로가 관습국제법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은 널리 인정되어 있다. 예컨대,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11-15 (5판, 1998); Matthias Herdegen, Internationales Wirtschaftsrecht 12-13 (2판, 1995); A. E. Boyle, Some Reflections on the Relationship of Treaties and Soft Law, 48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901, 903-904 (1999) 참조. 소프트 로는 국내법의 영역에서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영국의 기업인수규제규범, 내부자거래규제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독일의 내부자거래규제규준, 일본의 행정지도 등이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사례들이다. 각각 Peter Frazer, The Regulation of Takeovers in Great Britain, in: Knights, Raiders, and Targets ch. 27 (John C. Coffee, Jr. 외 공편, 1988); Joseph Blum, The Regulation of Insider Trading in Germany: Who's Afraid of Self-Restraint?, 7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Business 507 (1986); Michael K. Young,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Guidance: Governmentally Encouraged Consensual Dispute Resolution in Japan, 84 Columbia Law Review 923 (1984) 참조.

25) 사이버 공간에 대한 규율은 아직까지는 각국의 일방적인 규제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의 규율에 관한 규범체계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각국의 일방적인 규제가 계속 주류를 이룰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사이버 공간의 발달이 국가주권에 대한 잠식현상을 가져온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사이버 공간의 발달로 인한 국가주권의 잠식현상은 개별국가 대 국제사회의 차원이 아니라 개별국가 대 개인 또는 단체의 차원에서 우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사이버 공간에서는 국가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른바 '사이버 공간의 독립선언' 등이 그 상징적인 예이다). 물론, 인터넷의 발달이 국가영역의 개념이 갖는 의미를 감소시킴으로써 초래되는 국가주권의 잠식현상은 별도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의 발달과 국가주권 문제에 대하여는 Developments in the Law: The Law of Cyberspace, 112 Harvard Law Review 1574, 1680-1704 (1999); Jack L. Goldsmith, Against Cyberanarchy, 65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1199 (1998) 참조. 국제법에 의한 사이버 공간의 규율에 대하여는 Jack Goldsmith, Unilateral Regulation of the Internet: A Modest Defense, 11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35 (2000); Franz C. Mayer, Europe and the Internet: The Old World and the New Medium, 11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49 (2000); Yochai Benkler, Internet Regulation: A Case Study in the Problem of Unilateralism, 11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71 (2000) 참조.

26) 일반적으로, Celia R. Taylor, A Modest Proposal: Statehood and Sovereignty in a Global Age, 18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745 (1997) 참조.

27) Henry J. Steiner, Detlev. F. Vagts & Harold Hongju Koh, Transnational Legal Problems 316-317 (4판, 1994) 참조.

28) 예컨대, Alex Y. Seita, Globalization and the Convergence of Values, 30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429 (1997). 글로벌화의 각국 국내법 차원에서의 가장 큰 영향

은 각국법의 수렴현상이라 할 것이다. 이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하기도 하고 EU의 경우처럼 국제법에 의한 프로그램의 이행에 의하기도 한다. 한편, 글로벌화에 대한 우려는 글로벌화가 세계 각국의 국내 규범을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강력하게 반영하는 형태로 평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EU와 미국간의 관계에만 비추어 보면 영향력 전파의 방향은 일방적이지만은 않다. 예컨대, Gregory Shaffer, *Globalization and Social Protection: The Impact of EU and International Rules in the Ratcheting Up of U.S. Privacy Standards*, 25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 (2000) 참조.

29) Pierre-Marie Dupuy, *International law: Torn between Coexistence, Cooperation and Globalization*, 9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78 (1998) 참조. 또, Michael Reisman, *Designing and Managing the Future of the State*, 8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09 (1997); Serge Sur, *The State Between Fragmentation and Globalization*, 8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21 (1997) (세계화는 국내, 국제를 막론하고 인간의 [특히 경제적] 활동을 기존의 체도에 의한 규제나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는 개념 규정); Philip Alston, *The Myopia of the Handmaidens: International Lawyers and Globalization*, 8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35 (1997) (세계화시대에는 공적영역, 사적영역의 구별 의미가 상실되며 법규범의 발달도 그에 부합해야 한다는 결론) 참조.

30) Steiner, Vagts & Koh, *op. cit.*, 316-317.

31) Harold Hongju Koh, *Why Do Nations Obey International Law?*, 106 *Yale Law Journal* 2599 (1997) 참조. 또,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제93호 (1999)에 수록된 심포지엄(Symposium on Method in International Law) 논문들, 그리고 Anne-Marie Slaughter & Steven R. Ratner, *The Method Is the Message*, 93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10 (1999) 참조. 그 외, 현대 국제법 이론의 중요한 각 방법론들을 대표하는 연구들로는: Nathaniel Berman, "But the Alternative Is Despair" : *European Nationalism and the Modernist Renewal of International Law*, 106 *Harvard Law Review* 1792 (1993) (포스트 모더니즘); Nigel Purvis, *Critical Legal Studies in Public International Law*, 32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81 (1991) ("CLS" 어프로치); Hilary Charlesworth, Christine Chinkin & Shelley Wright, *Feminist Approaches to International Law*, 85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613 (1991) (페미니스트 어프로치); Kenneth W. Abbott,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 Prospectus for International Lawyers*, 14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35 (1989) (국제관계이론) 등 참조. 또, David Kennedy & Chris Tennant, *New Approaches to International Law: A Bibliography*, 35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417 (1994) (문헌 목록) 및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에 발표되는 유럽 학자들의 연구논문들을 참조(이에 대한 개관은 동 저널 제3권 p. 215 이하의 Bruno Simma, Editorial 참조). 한편, 고전 국제법 이론은 고흥주 교수의 위 논문과 Bruno Simma, *The Contribution of Alfred Verdross to the Theory of International Law*, 6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3 (1995) 등에 잘 정리되어 있으며,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에서는 'The European Tradition in International Law' 라는 제목하에 근대 국제법 이론의 거장들을 상세히 조명하는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Georges Scelle(제1권), Dionisio Anzilotti(제2권), Alfred Verdross(제6권), Hersch

Lauterpacht(제8권), Hans Kelsen(제9권) 등이 소개되었다.

32) Bruno Simma & Andreas L. Paulus, The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for Human Rights Abuses in International Conflicts: A Positivist View, 93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02 (1999) (필자들은 논문의 맨 앞에서, 실증주의에 대한 기고를 요청 받았을 때 그것이 칭찬인지 모욕인지 잘 분간할 수 없었다는 코멘트를 하고 있다). 짐마 교수는 UN국제법위원회 위원임. 최근 국제규범 형성의 중심점은 각국이 자국의 입장이나 이익을 표출하는 다자간 협상과 제도화된 장치로 옮겨가고 있고 (Bruno Simma & Andreas L. Paulu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Facing the Challenge of Globalization, 9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66 (1998) 참조) 관습국제법 형성, 준수의 동인도 그 핵심을 각국의 이해관계의 일치라고 보는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 Jack L. Goldsmith & Eric A. Posner, A Theory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66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1113 (1999) 참조. 관습국제법에 대한 전통적인 논의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는 Curtis A. Bradley & Jack L. Goldsmith,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s Federal Common Law: A Critique of the Modern Position, 110 Harvard Law Review 815 (1997)를 참조.